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송병길 의원)

의안 번호	18-12
----------	-------

발의년월일 : 2018. 1. .

발 의 자 : 송병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백남환, 서종수,
유호렬, 이봉수, 이학래,
전승학

1. 제안이유

마포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전문적인 입법업무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회 법률사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직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고문의 정원 위·해촉사항 및 임기(안 제3조~제6조)
- 다. 자문요청 등(안 제7조)
- 라. 입법·법률고문 참가 회의 개최(안 제8조)
- 마. 입법·법률고문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 지급 (안 제9조)
- 바.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위임 (안 제10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8조, 제13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필요

가. 소요예산 : 8,550천원

나. 산출기준 【2018. 3월부터 시행예정】

- 월 고문료 165,000원X3명X10월= 4,950,000원(부가세 포함)
- 자 문 료 110,000원X3건X10월= 3,300,000원(부가세 포함)
- 상 여 금 100,000원X3명X1회= 300,000원

※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비용추계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나. 입법예고 : 필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관리책임부서 : 마포구의회사무국

연락처 : 02-3153-618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3. 구의회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 자문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마포구 의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입법·법률고문은 구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구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 ② 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 ③ 구의회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구의회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구의회 의장은 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구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구의회 및 마포구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구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요청 등) ① 구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구의회 의장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신 기간을 정하여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문의뢰는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료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소송수행 위임) 구의회 의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구청장이 소송사무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직위

성명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축 장

직위

성명

귀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관 계 법 령

지 방 자 치 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전문적 입법 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고문료 등 지급 비용 발생(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제9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제7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소계(a)						
세출	○월 고문료	4,950	5,940	5,940	5,940	5,940	28,710
	○자문료	3,300	3,960	3,960	3,960	3,960	19,140
	○포상금	300	300	300	300	300	1,500
	소계(b)	8,550	10,200	10,200	10,200	10,200	49,350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구 예산	8,550	10,200	10,200	10,200	10,200	49,350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합계							49,350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마포구의회사무국 송미희
연락처	02-3153-618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2018년도 총 소요예산 : 8,550,000원

가. 월 고문료(3월부터 시행 예정)

- 165,000원×3명×10월 = 4,950,000원(부가세 포함)

나. 고문 자문료(3월부터 시행 예정)

- 110,000원×3건×10월 = 3,300,000원(부가세 포함)

다. 고문 상여금(연1회)

- 100,000원×3명×1회 = 300,000원